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환경관리 Q&A

회원사 및 배출사업장 환경기술인 및 관리자분들의
환경관리업무에 도움을 드리고자 자주 질의·문의·상담되는 환경관리 질의응답 사례를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폐기물 배출자의 범위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4 조의 3, 동법 시행규칙 제10 조의 2에 따르면, 건물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이거나 폐기물을 1일 평균 300kg 이상 배출하는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경우 재활용 할 수 있는 폐기물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종류, 성질, 상태별로 분리보관하여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폐기물배출자가 재활용될 수 있는 폐기물을 자체처리하지 않는 경우 자치구에서 해당 폐기물배출자의 재활용품을 수거해줄 의무가 있는지 또는 다른 이행강제(제재)수단이 있는지요?

A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제1항에 의거 폐기물배출자는 재활용가능한 자원에 대해 종류·성질·상태별로 분리보관하여 재활용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경우 동법 제12조의2의 제2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의2 제2항에 의해 지자체의 장은 3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제41조 제2항제1호에 의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Q

대기 자가측정 일부 미실시로 인한 행정처분은?

대기 4종 사업장입니다. 2012년 2월 16일 설치신고를 하여 기존 대기배출시설의 총 7개 배출구 중 2개가 증설되고 1개가 신규 설치되어 2012년 5월 1일 가동 개시 신고(총 8개 배출구)를 완료하였습니다. 2012년 6월 22일 대기자가측정을 실시하였으나 기존 시설에 대한 측정만 실시하고 신규 설치된 부분의 측정이 누락되었습니다. 2012년 12월 4일 관할행정기관으로부터 자가측정 일부 미실시(3개 배출구)로 위법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벌 대상에 해당되는지요?

A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1]에서 자가측정의 대상·항목 및 방법을 정하고 있으며, 동 [별표11]에 따라 4·5종 사업장의 경우에는 반기 1회 이상 측정을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반기란 1~6월까지, 7~12월까지를 의미하므로, 반기 1회 이상 자가측정을 해야 하는 배출시설을 2012년 5월에 설치하였다면 2012년 상반기 자가측정을 실시하지 않아도 될 것이며, 자가측정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행정처분 사항은 아닙니다.

Q | 비점오염 저감시설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질의

비점오염 저감시설의 설계 및 시공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면허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면허가 무엇이고 어떤 법에 의해서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A | 비점오염 저감시설의 설계 및 시공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면허는 산업환경설비 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또는 환경전문공사업(수질오염 방지시설) 등록증이며, 관련 법 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제9조제1항 환경시설공사업의 등록 및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입니다.

Q | 휘발성유기화합물 변경신고는?

주유소에 혼유방지스파우트 설치가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억제방지시설에 해당되는지요? 그러면 사업전에 변경신고에 해당하는 대상인지요?

A | 질의하신 혼유방지스파우트는 휘발유차량에 경유 주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유기에 부착하는 것으로 자체는 방지시설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설치하려면 주유기를 교체해야 하므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Q | 세탁시설의 폐수처리시설 설치의 필요 유무는?

세탁시설에서 폐수가 발생되는데 시간당 폐수 몇 m^3 (또는 t)이 될때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A | 용적 $2m^3$ 이상 또는 용수 $1m^3$ /시간 이상인 세탁시설에서 1일 폐수 최대 발생량이 일정량(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0.1m^3$,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을 포함하는 경우 $0.01m^3$) 이상인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되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신고)를 받아야 할 것이며, 다만, 세탁시설에서 1일 배출되는 최대 폐수량이 $20m^3$ 이하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 및 광유류가 포함되지 아니한 폐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에서 제외됩니다.

